

# 코웨이 주식회사 감사위원회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[목적]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[적용범위]

-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[용어의 정의]

- ① 이 규정에서 '내부회계관리제도'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,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'내부감사부서'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,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

### 제 4 조[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]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조[직무와 권한]

-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  - 1.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·재산상태 조사
  - 2.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
  - 3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
  - 4.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
  - 5.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
  - 6. 이사의 보고 수령
  - 7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- 8. 이사·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
  - 9.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·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·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1.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
  -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
  - 3. 참고, 금고, 장부 및 관계서류, 증빙, 물품 등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-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[의무]

-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
-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#### 제 7 조[구성]

-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 8 조[위원장]

- ① 위원회는 제 11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 9 조[소집권자]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10 조[소집절차]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 11 조[결의방법]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12 조[부의사항]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- 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 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 - 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 - 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- 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 - 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감사에 관한 사항
  - 1) 업무·재산 조사
  - 2) 자회사의 조사
  - 3) 이사의 보고 수령
  - 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 - 5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
  - 6) 감사계획 및 결과
  - 7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 - 8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
  - 9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 - 10)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·해임에 대한 승인
  - 11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  - 12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  - 13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
### 제 3 장 감사실시

#### 제 13 조[이사에 대한 보고요구]

-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 14 조[감사위원간 의견교환]**

- ① 감사위원은 이사 또는 사원으로 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- ② 각 감사위원은 감사계획의 작성,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.
- ③ 2 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직무내용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.

**제 15 조[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]**

-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(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)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**제 16 조[내부회계관리제도]**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·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17 조[중요 회의에의 출석]**

-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,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.

**제 18 조[문서 등의 열람]**

-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.
- ②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,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,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.

**제 19 조[재산의 조사]**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,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20 조[거래의 조사]**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4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**

**제 21 조[외부감사인과의 연계]**

-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,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.
-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 22 조[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등]

-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할 수 있으며, 외감법 제 4 조의 5 에 의한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 미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3 조[외부감사인의 독립성]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24 조[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]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감사결과의 보고

#### 제 25 조[감사록의 작성]

-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## 제 26 조[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]

-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,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27 조[주주총회에의 보고 등]

-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**부칙(2018. 3. 23.)**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